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이란 것을 합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1년간의 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년간 받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총계와 최종 부담할 세금을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시다.





2008 연말 정산에서 변경되는 내역

첫째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과세표준구간이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 과세표준	2008 과세표준	세율(주민세 포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8%
1,000~4,000 만원 이하	1,200~4,600만원 이하	18.7%
4,000~8,000 만원 이하	4,600~8,800만원 이하	28.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상	38.5%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서 예를 들면, 소득이 1200만원인 분의 경우 작년에는 1,000만 원까지는 8.8% / 200만원은 18.7%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는 1200만원 모두 8.8%를 적용하게 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지금은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1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환급을 받도록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간의 사용분을 소득공제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몇 해 전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일부 반영되었던 의료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어 별도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제혜택

우선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기본 공제는 100만원이 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추가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작년부터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어서 2명에 50만원 / 3명에 150만원 / 4명에 250만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올해 바뀌는 것으로는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구입비 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 올해에 자녀를 출산이나 입양 한 경우 올 한해 200만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이 너무 투명하다고 직장인들의 지각을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실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췌 · 도움출처 | 한국투자증권

시지노인전문병원 2008년 겨울호

발행인 광동환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http://대구노인전문병원.kr>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육수동 48-1(706-180) 전화 053-812-1212 팩스 053-812-9600

기획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사보편집위원회 제작 · 인쇄 대구MBC라이프 · 바로닷컴(053-628-8701~4)